

미국의 2008년 대선과 한·미 FTA 전망

2008. 8. 6

Los Angeles, California

이 청 광 (Chase Chonggwang Rhee)

평화문제연구소

Cell: 626-926-9710

Drcr2@hotmail.com

<http://www.internationaltraderesearch.com>

미국의 2008년 대선과 한·미 FTA 전망

I. 서론

2008년 11월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선거를 위한 전당대회에서 아직 정식으로 후보로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그간 프라이머리(Primary, 각주의 후보 지지 당원대회)에서 다수 지지 당원수를 확보한 공화당의 존 맥케인(John McCain)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바락 오바마(Barack Obama) 상원의원이 양당의 대통령후보로 선출될 것이 확실하다. 이 두 후보들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 그러면 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미FTA의 장래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자유무역협정이 국가 간의 여러 협력 모형과 비교하여 어떤 것인지 그리고 미국이 맺은 FTA, 한국이 맺은 FTA, 한미 FTA의 중요점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누가 2008년 11월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미FTA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국가 간의 협력모형¹⁾

여러 국가 간의 협력모형은 협력정도에 따라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완전한 통합까지 5가지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A. 지역협력개발 (Reg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지역협력개발은 아주 기초적인 국가 간의 경제적 협력으로 기업의 Joint-Venture와 같다. 한 국가가 하기에는 투자 규모와 위험이 너무 크거나 매우 중요하여 참가국들이 각기 사정에 맞는 지분을 갖고 참가하고 그 혜택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모형이다. 예로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가 공동으로 오리노코강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였고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분배하고 있다.

1)International Marketing by Cateora and Graham, 13th edition, pp.282-284.

B.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은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제거하여 회원국 간 상품(Goods), 서비스(Service), 자본(Capital)의 자유왕래를 하게하여 시장의 확대를 도모하는 협정이다.

C. 관세동맹 (Customs Union)

관세동맹은 회원국이 비회원국에게 똑같은 공동관세(Common Tariff)를 적용하는 국가 간 협력모형이다. 현재는 구라파에서 불란서와 모나코, 이태리와 산마리노 그리고 스위스와 리텐슈타인이 관세동맹을 맺고 있고 아프리카에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SACU)²⁾이 있다.

D. 공동시장(Common Market)

공동시장은 회원국간의 통상의 벽을 제거하여 하나의 시장을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상품, 서비스, 자본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자유왕래가 허용된다. 그리고 비회원국에 대하여는 공동관세를 적용한다. 가맹국간의 경제, 재정정책도 상호 협력을 통하여 하나의 경제, 재정정책을 추구한다. 한 국가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통합만 빼고 모든 것은 통합하는 협력모형이다. 가장 성공적인 CM은 유럽통합의 전신인 구주공동시장(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이다. 이외에도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CACM)³⁾, Andean Common Market(Ancom)⁴⁾, Southern Cone Common Market (Mercosur)⁵⁾, Caribbean Community(Caricom)⁶⁾등의 공동시장이 있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공동시장(CM)의 중요한 차이는 FTA에서는 상품, 서비스, 자본이 자유왕래 할 수 있으나 노동 즉 사람은 자유이동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과 회원국들이 각국의 다른 대외관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로 구성된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에서도 멕시코인들이 미국에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며 한 상품을 세 나라로 수입할 때 내야하는 관세가 다르다.

2) Botswana, Lesotho, Namibia, South Africa, and Swaziland.

3) Guatemala, El Salvador, Honduras, Nicaragua, and Costa Rica.

4) Bolivia, Colombia, Ecuador, Peru, and Venezuela.

5) Argentina, Brazil, Paraguay, Uruguay, and Venezuela.

6) Antigua & Barbuda, Bahamas, Barbados, Belize, Dominica, Grenada, Guayana, Haiti, Jamaica, Montserrat, Saint Kitts &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 the Grenadines, Suriname, and Trinidad & Tobago (15 nations).

예로 자동차의 경우 캐나다로 수입할 때는 6.1%, 미국으로 수입할 때는 2.5%, 멕시코로 수입할 때는 20%의 수입관세를 내야한다. 비회원국이 NAFTA의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제도를 두고 있다. 북미의 3개국 간에는 자동차관세가 없지만 한국자동차를 미국으로 2.5%관세를 내고 수입한 후 멕시코로 수출할 경우 멕시코의 20%관세를 내야한다 (미국에 낸 2.5%관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한국자동차가 NAFTA가 정한 원산지 규정을 맞추지 못하여 북미산으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이다.⁷⁾

E, 정치적 연합 (Political Union)

정치연합은 국가 간의 협력의 최종단계로 경제적, 정치적 제도의 완전통합을 의미한다. 구주공동시장12개 회원국들이 1992년에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을 인준하여 정치연합인 European Union(EU)을 결성하였고 정치적, 경제적 완전 통합의 길을 가고 있다. 상품, 서비스, 자본, 사람의 자유이동 뿐만 아니라 공동화폐(Euro), 공동외교와 방위정책, 공동입법과 사법 등 점차 완전통합을 의미한다. 한국과 추진 중인 FTA도 한국이 EU회원국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EU무역대표와 한다.

III. 미국이 맺은 FTA

미국이 제일 먼저 맺은 FTA는 1985년부터 FTA효력이 시작된 U.S.-Israel FTA이다. 그 이후 1989년의U.S.-Canada FTA, 1994년의 North American FTA, 2001년의U.S-Jordan FTA, 2004년의 U.S.-Singapore FTA 와 U.S.-Chile' FTA, 2005년의 U.S.-Australia FTA, 2006년의 U.S.-Morocco FTA,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FTA, U.S.- Bahrain FTA가 있다.

미국이 맺은 FTA는 관세를 매년 축소하여 NAFTA의 15년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10년이 경과하여야 무관세 무역의 효력이 완전하게 발생한다.

현재 미 의회의 인준을 받아 미 대통령이 서명하였으나 FTA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하는 등 행정부의 절차미비로 아직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FTA로 U.S-Oman FTA와 U.S.-Peru FTA가 있고 FTA협상을 끝내고 미 의회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FTA로 U.S.-Colombia FTA, U.S.- Panama FTA, US-Korea FTA가 있다.

7) Principles of International Trade (Import-Export) by Chase Chonggwang Rhee, 3rdEdition, p.37.

그리고 현재 미국이 FTA를 협상하고 있는 국가로는 Malaysia, SACU, Thailand, UAE(United Arab Emirates)가 있다. 미 의회가 2002년 무역법(Trade Act of 2002)에 따라 Bush대통령에게 부여한 무역촉진권(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Fast Track이라고도 함)이 2007년 7월1일 만료되어 현재는 미국의 무역협상이 임시 정지된 상태이다.

IV. 한국이 맺은 FTA

한국이 최초로 맺은 FTA는 한-칠레 FTA로 2004년 4월에 발효되었다. 그 다음의 FTA는 한-싱가포르 FTA로 2006년 3월에 발효되었고 한-유럽자유 무역연합(EFTA)⁸⁾ FTA는 2006년 9월에 발효되었다. 그리고 한-아세안(ASEAN)⁹⁾ FTA에 있어서는 일괄타결이 아니고 상품FTA만 2007년 6월에 발효되었다.

협상을 끝내고 무역장관의 서명은 되어있으나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FTA로 2007년 11월 서명된 한-아세안 서비스 FTA와 2007년 6월에 서명된 한-미FTA가 있다.

한국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FTA로는 한-아세안투자FTA, 한-유럽연합(EU)¹⁰⁾ FTA, 한-캐나다 FTA, 한-멕시코 FTA, 한-인도 FTA, 한-일본 FTA가 있다. 이중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EU FTA이고 일본과의 FTA추진은 현재 정지된 상태이다.

8)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Iceland, Norway, Switzerland, and Liechtenstein).

9)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Brunei, Vietnam, Laos, Myanmar, and Cambodia.

10)EU: Austria, Belgium, Bulgaria, Cyprus, the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the Netherlands, Poland, Portugal, Roman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27member states).

V. 한미 FTA의 요점¹¹⁾

A. 한미FTA협상일지

한미 FTA는 2006년 6월 5-7일에 워싱턴에서 시작된 제1차 협상이후 2007년 3월 8-12일까지 8차례의 공식협상과 무역장관의 마지막 협의를 거쳐 2007년 4월2일 협상을 끝냈다. 그 후 두 차례의 추가협상을 거쳐 드디어 2007년 6월 30일 양국 무역장관의 공식서명으로 한미FTA는 맺어졌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한미 양국의 의회 (미국의 경우는 상.하원)의 인준을 받은 후 대통령이 서명하고 각국이 필요한 관련 법규를 이 FTA에 맞게 고치는 절차가 남아있다.

한국측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9월 7일 국회에 한미 FTA인준을 요청하였으나 이직까지 담당위원회인 통일 외교통상 위원회에서 상정 토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FTA가 재정수입과 관련이 있어서 미 하원이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 미국 대통령이 제출한 FTA를 미 하원 세수 위원회(Ways & Means Committee)가 심사하여 45일 이내에 하원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15일 내에 수정 없이 찬반 투표를 해야 한다. 미 하원의 인준을 받은 FTA는 미 상원에 넘겨져 먼저 상원 재정위원회(Financial Committee)에서 15일 이내 심사하여 상원 본회의로 이송하고 상원 본회의도 역시 개정 없이 찬반 투표를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의회인준에 최장 90일이 필요하나 90일까지 가는 FTA는 없었다. 상원의원의 필리버스터 (Filibuster)도 금지되었다. 그리고 상·하 양원의 토의시간도 각기 20시간을 넘을 수 없다. 인준은 단순 다수가 결로 한다.

B. 한국과 미국의 비교

미국의 3억 인구는 한국의 4천9백만 인구의 6배가 되고 미국의 땅은 한국의 98배, 총 국내생산 (GDP)은 한국의 16배가 된다. 그러므로 미국시장은 한국시장의 16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한국의 3대 교역국의 무역의존도를 보면 미국19.5%, 한국 70%, 일본 21.9%, 중국 70%이다. 양국의 평균

11) 미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http://www.ustr.gov/Trade_Agreements/).

관세율을 비교하면 농산물의 경우 미국 12%, 한국 52%이고 비 농산물의 경우 미국 3.7%, 한국 11.2%이다

C. 무관세의 수혜측

한국과 미국의 수입관세가 제거될 때 어느 나라가 더 혜택을 입을까? 한국의 더 높은 수입관세가 없어지면 미국이 더 큰 혜택을 받게 되고 이미 낮은 미국의 수입관세가 없어져도 한국에 별 득이 없다는 주장을 자주 듣는다. 이 건 틀린 말이다.

수입관세제거의 혜택은 수입관세율에 시장크기를 곱한 수치이어야 한다. 미국의 GDP가 한국의 GDP보다 16배가 크므로 시장도 16배가 크다고 본다. 비 농산물의 경우 미국의 3.7%에 미국 시장크기 16을 곱하면 59.2%가 된다. 이것은 한국의 11.2%보다 약 5배나 높다. 농산물의 경우는 미국의 수입관세 12%에 16을 곱하면 192%가 된다. 이 수치는 한국의 52%보다 4배가 높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한국의 자동차 시장보다 13배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승용차 관세 2.5%에 13을 곱하면 32.5%로 한국의 승용차 관세 8%의 4배가 되고 미국의 상용차관세 25%에 또 13을 곱하면 325%가되어 한국의 상용차관세 10%의 30배가 된다. 현재 미국이 겨우 연간 4,000대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하는데 비하여 한국은 연간 70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그 파급효과 매우 크리라고 본다.

D. 양국의 상호의존도와 한국의 미국시장 점유율

2007년에 수입과 수출을 합하여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국이었고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2대 교역국이였다. 한국은 수출의 12.32%를 미국, 22.07%를 중국, 7.10%를 일본에 수출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수출의 2.98%를 한국, 5.61%를 중국, 5.39%를 일본에 수출하였다.¹²⁾

같은 해의 수입을 보면 한국은 수입의 10.43%를 미국, 17.66%를 중국, 15.76%를 일본으로 부터 수입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수입의 2.43%를 한국, 16.46%를 중국, 7.45%를 일본으로 부터 수입하였다.

12)한국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지난 5년간의 한국, 중국, 일본의 미국시장 점유율을 비교하면 매년 한국과 일본의 미국시장 점유는 낮아지고 있는 반면 중국의 미국시장점유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2003, 2.96%; 2004, 3.14%; 2005, 2.62%; 2006, 2.47%; 2007, 2.43% (1988, 4.6%)
중국: 2003, 12.13%; 2004, 13.38%; 2005, 14.55%; 2006, 15.52%; 2007, 16.46%
일본: 2003, 9.39%; 2004, 8.83%, 2005, 8.25%; 2006, 7.99%, 2007, 7.45%¹³⁾

E. 한미FTA의 범위

한미FTA에 포함된 사항은 상품, 농업, 섬유 및 의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원산지 규정, 관세절차, 위생, 무역예외의 기술장벽, 무역구제, 투자, 국경간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그리고 투명성이다.

F. 한미FTA의 기본원칙

한미FTA의 기본원칙은 상대국가로 부터 들어온 상품, 서비스, 투자에 대하여 내국인 대우 (National Treatment)를 하는 것과 최혜국대우 (Most-favored treatment)를 하는 것이다. 내국인 대우란 자국민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고 최혜국대우란 비가맹국에 부여한 최상의 대우가 있을 경우 그런 대우를 똑같이 회원 서로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대우를 부여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수입관세를 제거하여야한다. 전 상품을 부문(Category) A 부터 부문 K까지 분류한 후 부문별로 관세제거 일정을 정하였다. 거의 95%의 소비재와 생산재는 FTA발효로 부터 3년 이내에 무관세가 되고 그 외의 상품은 10년 내에 무관세가 된다. 그러나 예외로 수입관세가 15년에 걸쳐 없어지는 농산물도 있다.

G. 상호이익의 협정 (Win-Win Agreement)

한미FTA는 한 국가에게만 이익을 주고 그 만큼 다른 나라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로섬 (Zero Sum) 협정이 아니라 두 나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상호이익(Win-Win)협정이다.

1. 미국의 농업, 공업 그리고 서비스업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게 할 것이다.

13) U.S. Census Bureau, Foreign Trade Statistics (<http://www.census.gov/foreign-trade/statistics/index.html>).

2. 한국이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나 일본과의 경쟁에서 무관세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어 광대한 미국시장의 점유율을 증가 시킬 수 있게 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은 한미FTA덕에 GDP를 2% 그리고 수출을 15% 증가 시키게 되리라고 보고 있다.
3. 한국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하게 할 것이다.
4. 한국의 서비스 산업의 경제개혁과 규제철폐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5. 한국에 외국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늘려 고용의 증가, GDP 증가, 한반도의 안정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6. 한국 경제와 사회에 경쟁을 증가 시키고 규제와 부패를 줄이게 할 것이다
7. 한국산업의 공동화(Hollowing-Out)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 시킬 것이다. 한국의 대기업이 해외투자는 늘리고 국내 투자를 감소시키는 상황을 역전 시킬 수 있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대부분은 소비재이다. 한국 상품이 미국상품과 경쟁하는 것 보다는 일본산이나 중국산과 경쟁한다. 미국은 소비재에 관한 한 어차피 수입에 의존해야한다. 한미FTA로 한국산이 더 많이 수입되어 일본제와 중국제를 대체하면 미국의 이 두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줄게 된다.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대부분은 공장기계와 그 부속품이다. 한국은 기계와 부품을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미국수출공산품이 한국공산품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공산품을 대체하여 한국의 일본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H. 원산지 규정 (Rules of Origin)

FTA의 혜택을 제 3국이 갖는 것을 방지하고 오직 협정 당사국만 누릴 수 있도록 한미FTA도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 FTA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한국산이나 미국산이어야 한다. 100% 양국의 원료로 국내에서 생산 제조된 상품, 수출품의 제조에 비원산지 원료를 사용한 경우 가공으로 지정된 새 관세번호를 받은 원료로 제조된 상품이거나 역내가치비율 (Regional Value Content)이 90퍼센트 넘는 상품은 회원국산으로 인정된다.

원산지 규정에는 많은 예외규정이 있다. 섬유와 의류에 기본 예외가 있고 또

품목별로도 예외가 있다. 지정된 관세번호의 변경을 받지 못하여 비원산지산으로 남아있는 비원산지의 섬유원료(Fiber) 또는 원사(Yarn)가 섬유나 의류의 구성요소(Component) 생산에 사용된 경우 그 섬유원료나 원사의 총 무게가 구성요소의 총 무게의 7% 이내이면 원산지산으로 인정된다. 어떤 섬유나 의류에는 “Yarn Forward” 규정이 적용되어 원사가 회원국산이어야 완제품이 원산지산으로 인정된다.

자동차의 경우 역내가치비율이 순원가 기준으로 35%, 수출가격 기준으로 55% 이상이어야 회원국산으로 인정된다. 오히려 미국자동차회사들보다는 일본 자동차회사들이 미국공장에서 생산된 일본식자동차를 역내가치비율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어 한국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더 크다.

I. FTA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

한미FTA에서 한국정부가 노력했지만 포함시키지 못한 중요한 것은 전문인 비자 (Professional Visa), 선박 그리고 개성공단제품이다. 미국은 싱가포르와 칠레 FTA에 연간 6,800전문인 비자를 주기로 했고 호주 FTA에서는 대학학위자에게 10,500 비자를 주기로 했다. 미국은 국내항구간의 운행에 사용되는 선박은 1920년의 U.S. Merchant Marine Act에 따라 선박이 미국국적이고 또 미국산이어야 한다. 개성공단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데 실패하였다.

J. 개성공단 제품

한국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미국이 같은 수입품에 수출국에 따라 다른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정상교역국(Normal Trade Relationship Nation)으로 수입되는 상품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비정상교역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상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한국은 미국의 정상교역국이고 북한은 비정상교역국이다. 예로 스테인리스 요리 기구를 한국에서 수입하면 2%의 관세를 내나 북한에서 수입하면 40%의 관세를 내야하고 실크 남자옷의 경우 한국산은 0.9%, 북한산은 45%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개성공단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의 수출은 불가능하다.

K. 한국의 수혜산업

한미FTA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산업은 자동차, 섬유와 의류, 전자, 구두, 가죽제품 등의 제조업과 금융, 보험 등의 서비스산업이라고 본다. 제조업은 미국시장에서 관세가 없어지는 덕에 중국산과 일본산보다 경쟁력이 더 강하여진다. 서비스산업은 강력한 미국의 경쟁에 직면하여 체질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본다.

L. 한국의 취약산업

한미FTA로 농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농업은 한국경제의 기반이 아니다. 4천9백만의 한국인구의 7.1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한국 GDP기여도도 3.7%에 불과하다.¹⁴⁾ 피해농가에는 정부가 알맞은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농업지원도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가입할 때 제출한 농업보조일정표를 고려해서 해야 한다. 불법농업보조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순한 자금지원보다는 혁신적인 농업개혁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M. 한국의 쌀과 쇠고기 수입

한국도 더 이상 쌀 수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되었다. WTO는 쌀 수입국이 연간 수입량을 절대 제한하는 절대쿼타(Absolute Quota)에서 관세율 쿼타 (Tariff-Rate Quota, TRQ)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TRQ는 한 국가가 연간 수입하겠다는 물량을 정하고 이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이 물량을 넘어서 들어오는 수입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2004년 WTO 협상에서 한국은 TRQ로 관세화(Tariffication)하는 것을 2014S년까지 유예 받는 대신 매년 일정량을 수입하겠다는 MMA(Minimum Market Access)를 약속하였다. 2007년의 MMA가 304,000 톤이었다. 일본은 이미 쌀 수입을 TRQ로 전환 하였고 대만에 수출도 한다. 한국도 일본과 같이 MMA를 TRQ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TRQ에서는 수입관세를 국내시세와 국제시세와의 차이를 관세로 부과하여 국내에서 국산 쌀과 수입쌀 값을 같게 할 수 있다. 결국 보호가 아니라 개방이 농업을 살리는 길이다. 한편 깜짝 놀랄 일이 2007년에 벌어졌다. 작년 6월에 전북 군산의 재희 미곡처리장이 처음으로 한국 쌀 52.5톤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수출한 것이다.

14) 한국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면 한우 농가는 모두 몰락하게 될까? 광우병 우려로 미국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기 전의 한국의 쇠고기 수입을 보면 2003년에 한국은총 수입량 293,606톤 중 미국에서 67.9%, 호주에서 21.8%, 캐나다에서 1.6%, 뉴질랜드에서 8.6%를 수입하였다. 2006년에는 총 수입량 179,405톤 중 호주에서 76.4%, 뉴질랜드에서 22.1% 수입하였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입을 일체 하지 않았다.¹⁵⁾ 이것은 미국쇠고기의 수입중단의 덕을 호주와 뉴질랜드가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VI. 맥케인(McCain)과 오바마 (Obama)의 한미FTA에 대한 입장

미공화당의 대통령후보가 될 맥케인 상원의원과 미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될 오바마 상원의원의 한미FTA를 비롯한 미국의 FTA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 맥케인의 입장

맥케인은 여러 번 자유무역을 지지한바 있다. 금년 4월에 오하이오주 영스타운에서 쇠국주의가 제 기능을 발휘한 일이 없다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칭찬하였고, 5월 마이애미에서 쿠바를 격리시키기 위해서 전 남미로 자유무역을 확대해야한다고 역설하였고 또 지난달 7월에 콜롬비아와 멕시코를 3일간 방문하였을 때 미콜롬비아FTA를 지지한다고 하였다. 직접적으로 한미FTA에 대하여 언급한바가 보도된 것이 없으나 한미FTA도 역시 지지하리라고 본다.

B. 오바마의 입장

오바마는 상원의원으로서 상원인준 투표에서 미·오만 FTA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미·중미FTA에는 반대표를 던졌고 미·페루FTA인준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 그간 힐러리 클린턴상원의원과의 치열하게 전개된 민주당 프라이머리 에서 경쟁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을 비판하고 반대한다고 하였다. 이 두 상원의원은 FTA를 찬성하는 발언을 한 선거참모를 해임까지 하였다.

15)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http://kmta.or.kr>).

VII. 결론

현 미 의회의 정당별 구성을 보면 2007-2009임기의 하원에는 민주당233명, 공화당 202명 (합계 435명)의 하원의원이 있고 상원에서는 민주당 49명, 공화당 49명, 무소속 2명 (합계 100명)의 상원의원이 있다. 금년 11월 민주당 12석, 공화당 21석의 상원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선거를 치러야 한다. 요즈음의 인기도로 보아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7월24일 월스트리트와 엔비시(NBC) 합동 여론조사에서 오바마가 47%대 41%로 맥케인을 앞서고 있으나 많은 유권자들이 오바마의 배경과 가치관에 염려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백인 유권자들이 흑인 대통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가 맥케인과 오바마 중 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FTA는 관세제거를 포함하기 때문에 세수와 관련되어 미 하원에서 먼저 통과 시켜야한다. 2006년 11월 11일 양국의 무역장관이 서명한 미·콜롬비아 FTA에 뜰을 드리며 1년 반을 기다리다가 금년 4월7일에 부시대통령이 미 의회에 제출하였다. 미 하원은 심사도 시작하지 않은 채 3일 후인 4월 10일에 인준투표를 무기한 연장을 가결하였다. 투표 무기한 연장은 부결과 같은 결과를 의미한다. 이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대통령이 서명하여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시대통령은 흑이나 있을 인준부결을 우려하여 미 의회에 한미 FTA 인준안을 제출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2007년 9월 국회에 이 안이 제출되었고 금년 총선에서 한미 FTA를 지지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가 되었는데 조속히 인준하여 미 의회를 압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미 의회에서 민주당의 행위로 보아 한미FTA도 이번에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도 의원들의 이해가 큰 쇠고기와 자동차의 한국시장개방의 확신이 없는 한 통과가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NAFTA이후 15년 만에 합의한 가장 큰 FTA를 부결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재협상이 아니고 NAFTA에서 노동과 환경에 관하여 한 것과 같이 부속협정(Side Agreement)을 마련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음을 한국측이 강하게

주장해야 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의 국익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한미FTA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나 아무래도 FTA를 꾸준히 지지한 맥케인 상원의원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강하게 인준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여 빠른 시일에 한미 FTA가 발효되어 양국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